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4393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 ○○○도 ○○○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피고가 2022. 1. 4.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18,336,000원, 지방교육세 3,667,200원
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외 3,055명과 함께 ○○시 C 대 89,0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유해 오던 중,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1. 16. ○○시 C 대 88,201.3㎡(B 외 3,055명 공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 830.7㎡(원고 소유)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면허세 18,336,000원, 지방교육세 3,667,200원의 합계 22,003,2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 2. 2.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21. 12. 9.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감액경정,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공유토지분할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점, ②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르면 분할신청에 따른 분할비용의 부담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뿐인 점, ③ 공



유토지분할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분할신청인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분할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공유토지분할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7호 서식의 분할등기 촉탁서의 '등록면허세' 항목에는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 제1항)'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점, ⑤ 피고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분할신청을 한 다른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등기촉탁하였으므로 다른 신청인들과의 과세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호,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여기서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구 지방세법 제2장(제6조부터 제22조의 2까지)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항 제



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제11조는 제2장에 속한다.

구 지방세법 제15조에서는 세율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항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제15조 역시 제2장에 속한다.

3)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은 제2장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에서 제외되고, 여기에서 공유물분할을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제한해야만 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5) 피고도 통상적인 공유물분할(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르지 않은 분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행정안전부 지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 부과 요령'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이라는 문건의 제목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부과요령 보완 시달'(시행일 2012. 11. 8.)이고, 그 내용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분할 시까지 최종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가 당초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를 과세하기 바랍니다'는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반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2장 취득세(제6조부터 제22조의 2까지)

제1절 통칙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



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끝.